

#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470
----------	------

제출일자 : 2019.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1. 제안이유

- 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의 위탁 기간이 ‘19.12.31’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시설의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제5조(위탁사무의 대상)

○ 추진 필요성

-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 市 직영으로 운영 시 청소년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확보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이는 인건비 부문의 증가로 이어져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의 질적 하락이 예상됨.
- 따라서, 가출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역량있는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위탁범위 :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전반

○ 위탁내용

-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과의 연계협력
-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중구 남산로 8길 14(남산동)
- 규 모 : 103.5㎡(사무실, 거실, 식당, 세탁실, 화장실 등)
- 운영인력 : 6명(소장 1, 직원 5)
- 기존수탁기관 : 대구YMCA(2017.1.1. ~ 2019.12.31.)
- 사 업 비 : 225,980천원(국비 97,240천원, 시비 128,740원, '19년 기준)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0.1.1. ~ 2022.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사업비 225,980천원('19년 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합계	225,980		
사무비	174,877	· 인건비 168,877	
		- 급여 및 수당	
사업비	19,603	· 사무운영비 6,000	
		-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운영비 7,303	
사업비	19,603	-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연료비 등	
		· 교육비 6,800	
		- 학습지원비, 기타교육비 등	
사업비	19,603	· 사업비 5,500	
		- 자립지원, 활동지원, 사례관리 등	
시특별비	31,500	· 야간생활지원, 종사자수당, 생활자지원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

## 관 련 법 령

### 참고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참고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참고 3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 4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참고 5**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
-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붙임 2]

##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 가출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상담 및 자립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인 「대구시중장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19.12.31일자로 만료예정됨에 따라
- ◇ 투명한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4조(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 II. 추진방향

- 청소년쉼터 운영에 있어 위·수탁의 목적·기간·사무 및 위탁·협약 방법을 정하기 위한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수탁단체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수탁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로 투명성·공정성 확보
- 수탁기관 변경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 III. 시설현황

● 중장기청소년쉼터 2개소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소일	직원	입소정원	現 수탁단체	위탁기간
남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중구 남산로 8길 14	103.5m <sup>2</sup>	'14.04.24	6	7	대구 YMCA	'17.1.1 ~ '19.12.31
여자 중장기 청소년쉼터	달서구 당산로 106	133.7m <sup>2</sup>	'05.12.27	6	7	대구 YMCA	'17.1.1 ~ '19.12.31

### IV. 세부추진계획

#### 1 위탁사업 개요

- 시설명
  - 대구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 대구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 위치 : 미정(위탁운영단체에서 확보하는 장소)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까지(3년간)
- 사업비 : 451백만원(국비 194백만원, 시비 257백만원)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침실, 식당, 화장실 등
- 주요사업 : 기본적 먹거리·생활·건강 등 보호서비스, 학업·직업  
자립지원 및 가정, 사회복지 지원

## 2 위탁단체(자격요건)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주사무소(지부)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는,
- 최근 3년이상 청소년업무 수행경험이 있으며, 운영시설(쉼터) 확보가 가능한 비영리 법인, 비영리 등록단체 등 청소년단체

### < 청소년단체 >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 · 교육학과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 3 위탁조건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종사자 고용승계
- 수탁단체 자립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 일부 보조
-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대·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유지·보수의무 부담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우리시와 수탁단체의 위·수탁협약으로 정함

## 4 위탁단체 선정방법

- 모집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단체 신청접수

- 공고기간 : 14일 이상

-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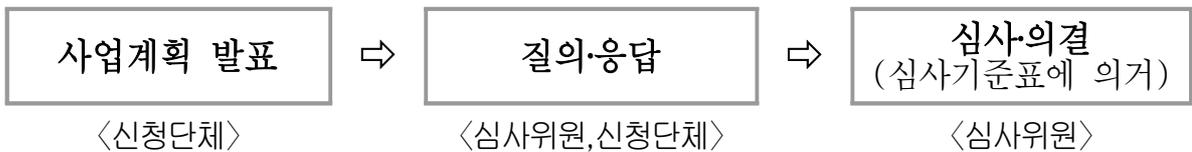
※ 응모단체가 없거나 1개 단체가 응모할 경우 재공고(5일이상)

● 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8명)
- 위원수 : 6~9명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위 원 : 교수, 청소년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 \* '19년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활용

- 심 사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영능력 등
  - \* 심사항목 및 기준(안) : 【붙임 2】
  - 심사방법
    - ▷ 신청단체의 사업계획 설명 및 질문답변
    - ▷ 작성된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 다수 공모일 경우 : 심사기준표에 의거 세부항목별 심사
- ※ 심사위원별 채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단체 선정



● 위탁단체 선정 : 1개 단체

- 2개 이상 단체 접수시 : 심사결과 최고점수 득한 1개 단체 선정
- 1개 단체 접수시 : 위탁단체 적격여부 심사(서면심사 가능)
- \*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결과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서면으로 개별통보

## 5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사무위탁신청서, 단체소개서, 청소년사업추진실적,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각10부
- 접수기간 : '19. 10. 4. ~ 10. 18.(15일간) 18:00까지(토·일요일 제외)  
\* 공고 일자/장소 : 2019. 10. 4.(예정), 市 홈페이지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청소년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단체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 제출서류는 A4용지 크기로 하며 상철함
  - 선정된 후에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시 응해야 함

## V. 행정사항

- 의회 동의 : 제269회 임시회 상정
- 수탁단체 모집공고 : '19. 10. 4(금) ~ 10. 18(금)
  - 공고문(안) 및 신청서 서식 : 붙임4
- 신청서 접수 : '19. 10. 4. ~ 10. 18.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격자 선정 : '19. 10월 말 예정
- 선정통보 : '19. 11월 초 예정
- 세부실행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 : '19. 11월 ~ 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위·수탁사무 개시 : '20. 1. 1. ~